

이 자료는 2007년 6월 5일(화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브리핑 내용은 이 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책 브리핑 자료

2007. 6. 5(화)

1.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정
2. 특정 자동차번호판(1001, 2001 등) 부여제도 투명성 제고
3. '사발이 오토바이'를 이륜자동차로 신고의무화
및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
4. 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마련 및 고령자 친화형
자동차 개발

건설교통부
(생활교통본부)

정책브리핑 요약자료

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

- 정부차원의 새차 증후군 관리방안 마련 -

- '새집증후군'과 유사한 두통, 눈·피부 등의 따가움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새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부터 발생
 - 국민의 안전운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선진국*과 같이 새차증후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
- * 일본 : 정부가 아닌 민간(JAMA : 일본자동차공업협회)이 수립한 자율적인 권고기준.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벤젠은 제외
- * 독일 :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간(TÜV : 자동차부품 인증기관)이 수립한 자율 기준이나 인체위해성 방지차원이 아닌 알레르기 예방차원의 엄격한 기준
- '09년 7월 1일 이후 신규 제작·판매되는 승용자동차가 만족해야 하는 「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」을 6월 5일에 마련하였으며
 - '09.7.1부터 매2년 마다 시험 등을 거쳐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·발표 예정
- 이로써 쾌적한 자동차 실내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및 자동차의 안전성이 향상되고
 - 자동차 제작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

특정 자동차번호판(1001, 2001 등) 부여제도 투명성 제고

- 특정 자동차번호판 부여와 관련된 특혜소지 해소 -

- 일부 특정인들의 특정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이 알려지면서 등록번호 부여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기
 - 지방자치단체장(군수 2000, 부군수 2001) 및 모 그룹 회장(1001)에게 특정 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써 관심 유발
- 특정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예정

【특정번호 지정 예시】

- ① 등록번호중 중간 숫자표시가 00인 숫자 구성(1004, 2000 등)
- ② 등록번호중 네자리 숫자표시가 일련번호인 숫자 구성(1234 등)
- ③ 등록번호중 네자리 숫자표시가 동일한 숫자 구성(7777 등)

- 이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기능을 보완(7~8월)하여 일부 지자체 시범적용(9월) 후 전국에 확대적용(10월)할 계획이며
- 전산프로그램 기능보완 전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(6월)할 예정
- 동 정책시행으로 특정번호판과 부여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 가능성과 특혜소지를 해소하여 자동차 등록행정의 신뢰성 향상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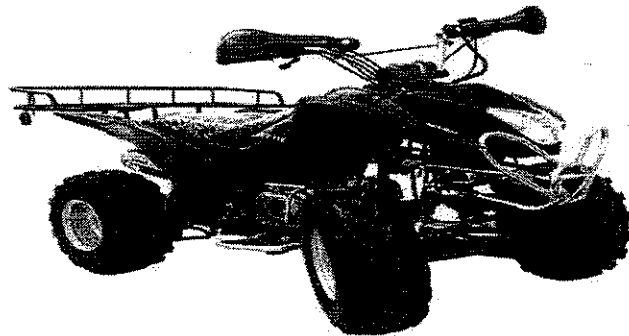
‘사발이 오토바이’ 를 이륜차로 신고의무화 및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

- 신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민안전 및 편의성 제고 -

① ‘사발이 오토바이’ 의 신고대상화

- “사발이 오토바이”(ATV : All Terrain Vehicle)는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여 교통안전에 문제점 발생
- * 별도집계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운행과정에서 ATV가 적발된 건수는 이륜차 전체 적발건수 50여만건(연 평균)에 포함되어 있음.(이륜차 신고대수 175만 여 대)

【 ATV 형태 】



- 이에 ATV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 공포(6.7)하여 이륜자동차와 같은 수준*으로 동 차량을 관리 예정
- *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, 사용신고(이륜자동차번호지정), 제작결함의 시정, 정비·검사명령 등의 규정을 적용
- 번호판 부착, 의무보험 가입, 면허증 취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하여 '09.1.1부터 시행할 예정
- 동 조치로 인해 ATV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운전자 및 피해자 보호도 가능

② 부분 정비업 작업범위 확대

-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해서도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**Positive**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**Negative**방식으로 변경(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 개정 '07 6.7)
 - 현행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장치 24개 항목의 정비가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7개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변경
 - * 동 조치로 이전에는 부분정비업체에 작업을 할 수 없었던 ‘동력 전달장치의 차축 및 차동기어 정비’, ‘브레이크장치의 허브브레이크 및 허브교환’ 등 가능

【 참고 :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】

장 치 명	제한되는 작업 범위
1. 원동기 장치	○ 엔진 교환, 엔진 분해정비,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·부착 ○ 디젤분사펌프(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)의 탈·부착, 정비
2. 연료 장치	○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·부착, 정비
3. 조향 장치	○ 조향기어의 탈·부착, 정비
4. 제동 장치	○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·부착, 정비 ○ 브레이크 챔버 탈·부착, 정비 ○ 분리식 배력장치 탈·부착, 정비
5. 완충 장치	○ 없음
6. 전기·전자 장치	○ 전조등 탈·부착, 정비(단순 전구교환은 제외한다)
7. 기타 장치	○ 차체,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·용접·도장

- 동 정책으로 근거리에 있는 부분정비업으로부터 폭넓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

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마련 및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

-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정책 추진 -

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

○ 매년 차 대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%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

* '04년도 OECD 평균(17.2%), 일본(30.9%), 미국(11.1%), 유럽(17.2%)

○ 이에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해 '08년말까지 보행자 보호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,

- 올해부터 자동차의 보행자보호(머리) 안전성을 평가하여 12월에 발표('08년부터 다리(하체) 평가도 포함) 예정

○ 동 정책시행시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체구조 및 재질의 개선과 함께, 관련 첨단기술* 개발을 앞당겨 보행자 안전성의 획기적으로 향상 기대

* 자동차가 보행자 충돌상황을 감지하여 보행자 머리가 후드에 충돌하기 이전에 후드를 상승시키는 장치인 Active Hood Lift System과 후드 위에 매트를 펼치는 Air Mat System 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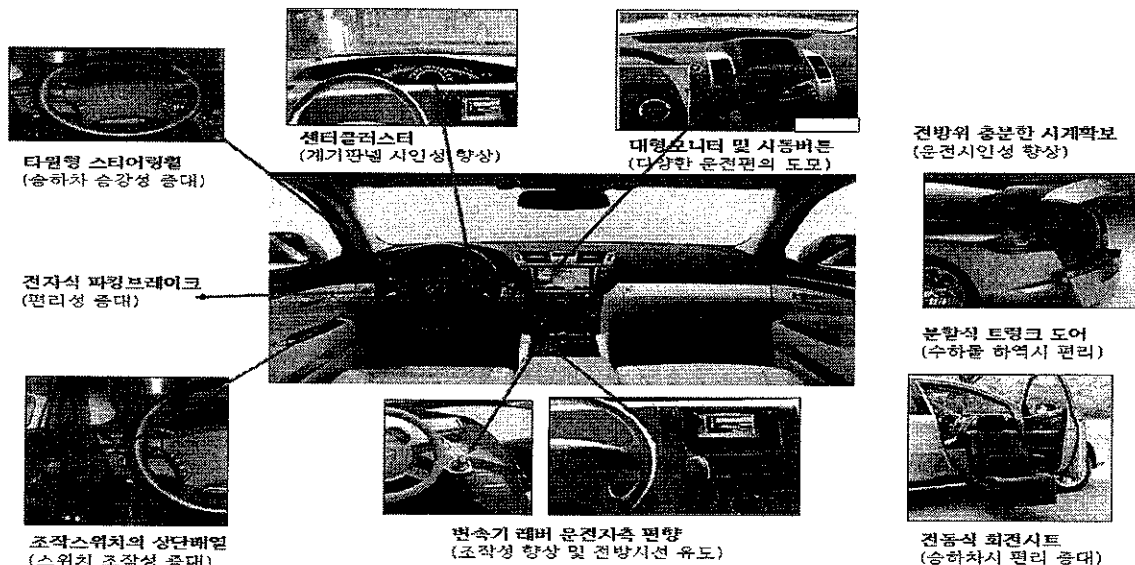
【 Active Hood Lift System 】



② 고령자의 운전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자동차 개발

- 우리나라는 조만간 고령 사회('19년), 초고령 사회('26년)에 도달할 것이 예상되나,
 - 현재 고령자의 60%가 외출·이동시 어려움을 느끼며 고령자의 45%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외출을 필요('04년 교통연구원 연구결과)
- 이에 향후 5년간('07.8~'12.7) 약 25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
 - 고령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고 고령자의 운전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'12년까지 완료하고 관계부처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)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보급 확대책도 마련예정
-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한 적절한 준비로 복지사회 구현,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효과기대

【 참고 : 고령자 친화형자동차(Silver Vehicle) 기술(예시) 】



정책브리핑 자료

- ◆ 새차의 실내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 인해 두통, 눈·피부 따가움 등의 ‘새차증후군’을 방지하기 위한
 - ‘실내공기질 권고기준’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운전 확보 및 건강 보호 필요성 증대

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〉

- 대상차종 : 신규제작 승용차
- 유해물질(6종) : 포름알데히드, 벤젠, 톨루엔, 자일렌, 에틸벤젠, 스티렌
- 공표 및 시행 : '07년 6월 공표, 시행은 '09년 7월(2년유예)
 - * 벤젠, 자일렌은 '10년 7월부터 시행(3년 유예)

⇒ '09년 7월부터 새차 실내공기질 조사 발표

추진배경

- 새차를 운전하는 국민으로부터 두통, 눈·피부 등의 따가움 등 ‘새집증후군’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발생
 - 국민의 안전운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「새차증후군 관리방안」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

추진경과

-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,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('04~'08)」수립('04.12)
- 「실내공기질관리 세부추진계획」 수립시 「새차증후군 관리 방안」 마련계획 제시(건교부)('05.3)
- 새차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(36대) 및 안전운행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연구('05.5~'06.12 : 자동차성능연구소)
- 「새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」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심의('06.12, 2회) 및 제작사 의견 수렴('07.2.)
- 「새차 실내공기질 관리방안」에 대한 공청회 개최('07. 3.21) 및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대한 제작사 설명 및 의견 수렴 회의 개최('07.5)

주요 내용

- 법적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적 관리방안으로 「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」 제정(6.5)
 - * 세계적으로 법적기준을 정한 나라는 없으며, 일본은 자동차공업협회(JAMA), 독일은 자동차부품인증기관(TÜV : 민간),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운영

- * 일본 : 정부가 아닌 민간(JAMA : 일본자동차공업협회)이 수립한 자율적인 권고기준.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벤젠은 제외
- * 독일 : 일본과 마찬가지로 민간(TÜV : 자동차부품 인증기관)이 수립한 자율 기준이나 인체위해성 방지차원이 아닌 알레르기 예방차원의 엄격한 기준
- 권고기준은 자동차 출고후 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, 운전자 차내 체류시간(평균 2.9시간/일) 및 유해물질별 인체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수립

【 권고기준(안) 】

(단위 : $\mu\text{g}/\text{m}^3$)

포름알데히드	벤젠	톨루엔	자일렌	에틸벤젠	스티렌
250	30	1000	870	1600	300

- *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실태조사, 민관협의회, 제작사 의견수렴 및 공청회('05.5~'07.5) 등을 거쳐서 마련

【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】

측정대상	측정온도	측정전 실내 밀폐시간
제작일부터 4주 이내의 승용자동차	25±2℃(8월 평균기온 23~27℃, 독일 21℃, 일본 23℃)	2시간

- * 측정분석방법은 KS규격(ISO규격과 동일)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

- 건교부에서는 '09. 7. 1부터 매 2년 마다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·발표함으로써 제작사의 적극적인 이행 유도

기대 효과

- 자동차 실내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및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
- 자동차 제작 관련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도 작용

향후 계획

- 권고기준은 '07. 6. 5 공표하여 '09. 7. 1부터 시행할 예정
- * 내장재 제작기술 개발을 감안, 2년 후부터 적용(벤젠, 자일렌은 3년)

특정 자동차번호판(1001, 2001 등) 부여제도 투명성 제고

- ◆ 지방자치단체장(군수 2000, 부군수 2001) 및 모 그룹 회장(1001)에게 특정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특혜 의혹제기
 - 특정번호를 지정하고 해당 번호에 대하여는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
 - ‘선택지정’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선호하는 특정번호 추출시까지 연속적인 사용을 방지
 - * ‘선택지정’은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상의 기능

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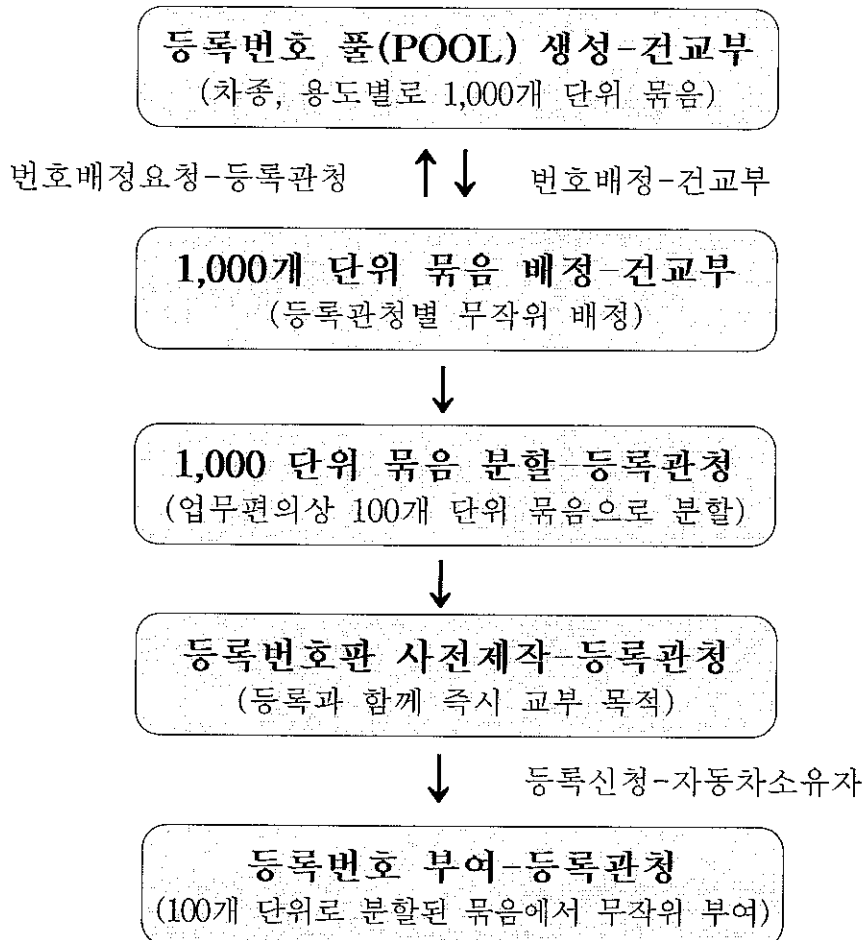
- 일부 특정인들의 특정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이 알려지면서 등록번호 부여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제기
 - 지방자치단체장(군수 2000, 부군수 2001) 및 모 그룹 회장(1001)에게 특정 등록번호가 부여됨으로써 관심 유발

현행 방식의 문제점

- (전산프로그램)에 의한 등록번호 부여는 랜덤하게 선정된 번호를 부여하되 수요자에게 제한적인 번호선택 옵션(홀·짝수 및 2개 번호중 택1 등)을 부여하는 방식이나,

- 번호선택 옵션중 2개 번호에서 1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‘선택 지정’ 기능을 여러 번 활용할 경우 등록번호 임의부여로 사용할 가능성 내포
- (수기입력)에 의한 번호부여방식의 경우 등록관청이 자동차 소유자가 선호하는 특정번호를 임의로 부여할 가능성 상존
- * 수기입력은 전산망 마비, 정전 등 비상상황에만 가능

【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절차】



주요 내용

- (전산프로그램) 특정번호를 지정하여 해당 번호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만 부여하도록 하고

【특정번호 지정 예시】

- ① 등록번호중 중간 숫자표시가 00인 숫자 구성(1004, 2000 등)
- ② 등록번호중 네자리 숫자표시가 일련번호인 숫자 구성(1234 등)
- ③ 등록번호중 네자리 숫자표시가 동일한 숫자 구성(7777 등)

- ‘선택지정’*의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선호하는 특정번호 추출시까지 연속적인 사용을 방지

* 2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는데 사용하는 ‘전산프로그램’상의 기능

- (수기입력) 방식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번호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

- 등록말소후 재사용 등의 사유로 임의부여된 특정번호는 담당자, 부여경위 등의 기록이 표시되도록 하여 적절한 처리여부 확인

기대효과

- 동 정책시행으로 특정번호판과 부여와 관련된 부조리 발생가능성과 특혜소지를 해소하여 자동차 등록행정의 신뢰성 향상 기대

향후 추진계획

- 등록관청이 등록번호 부여에 활용하고 있는 ‘자동차등록 프로그램’의 기능보완을 추진
 - 특정번호 수기에 의한 입력금지 및 선택지정 기능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(~'07.8)
 - 프로그램 개선내용 일부 지자체 시범적용 및 운용상 문제점 보완('07.9)
 - 개선된 프로그램 전국 확대적용('07.10)
- 이와 함께 프로그램 개선 및 적용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프로그램 기능보완에 앞서 부여방식 개선에 대한 행정지시 및 교육실시
 - 등록번호 부여시 관련규정 준수 및 특정번호 임의부여 금지 등 행정지시('07.6)
 - 등록관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방식 개선에 대한 교육실시('07.6)

‘사발이 오토바이’ 를 이륜 자동차로 신고 의무화 및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

- ◆ 놀이공원 등에서 레포츠 용도로 보급되어 사용중인 삼륜 또는 사륜의 구조를 가진 속칭“사발이 오토바이”(ATV : All Terrain Vehicle)를 이륜차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
- ◆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Positive 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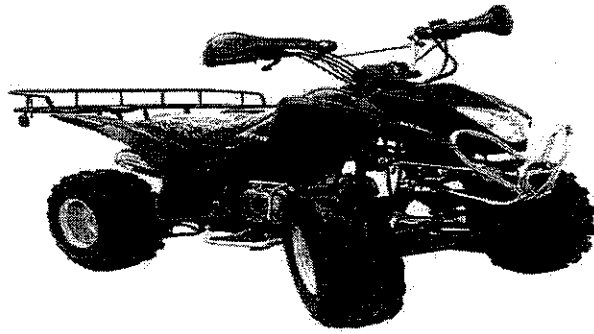
1 ‘사발이 오토바이’ 신고대상화

추진배경

- 취급·관리가 편리하여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“사발이 오토바이”(ATV : All Terrain Vehicle)는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무신고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점 발생

* 별도집계가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운행과정에서 ATV가 적발된 건수는 이륜차 전체 적발건수 50여만건(연 평균)에 포함되어 있음.(이륜차 신고대수 175만 여 대)

【 ATV 형태 】



주요 내용

- 이륜차 종류 개정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으로 **ATV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륜 자동차로 사용신고토록 조치** ('07. 6.7 공포)
- 이에 따라 ATV에 대해서도 이륜자동차와 같은 수준*의 관리가 이루어 짐
- *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, 사용신고(이륜자동차번호지정), 제작결함의 시정, 정비·검사명령 등의 규정을 적용

기대 효과

- ATV로 인한 사고시 피해구제책이 미비했으나 동 조치로 ATV 운전자 및 사고피해자의 보호도 가능

향후 계획

- 번호판 부착, 의무보험 가입, 면허증 취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하여 '09.1.1일부터 시행할 예정
- 기존 사용중인 “사발이 오토바이(ATV)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추가경과기간을 두어 '09.6.30일까지 사용신고토록 조치

②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확대

추진배경

- 자동차 제작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부분정비업이 할 수 있는 작업범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,
 - 정비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자동차 정비업의 업종간 다툼이 계속

주요 내용

-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해서도 정비가능 항목을 열거한 **Positive**방식에서 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한 **Negative** 방식으로 변경(『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』 개정 '07 6.7)
 - 현행 부분정비업체에서는 8개장치 24개 항목의 정비가 가능토록 되어 있던 것을 7개장치 12개 항목 외에는 모두 부분정비업에서 정비가 가능하도록 변경
 - * 동 조치로 이전에는 부분정비업체에 작업을 할 수 없었던 ‘동력 전달장치의 차축 및 차동기어 정비’, ‘브레이크장치의 허브브레이크 및 허브교환’ 등 가능
- 정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**휠얼라이먼트를 의무적으로** 갖추도록 하고,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에는 전조등도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

기대효과

- 동 정책으로 근거리에 있는 부분정비업으로부터 폭넓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편의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

향후 계획

- 개정 내용에 따른 부분정비업자의 업무지침 마련 및 시달('07. 6)

【 참고 :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】

장 치 명	제한되는 작업 범위
1. 원동기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엔진 교환, 엔진 분해정비,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·부착 ○ 디젤분사펌프(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)의 탈·부착, 정비
2. 연료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·부착, 정비
3. 조향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향기어의 탈·부착, 정비
4. 제동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·부착, 정비 ○ 브레이크 챔버 탈·부착, 정비 ○ 분리식 배력장치 탈·부착, 정비
5. 완충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없음
6. 전기·전자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조등 탈·부착, 정비(단순 전구교환은 제외한다)
7. 기타 장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차체,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·용접·도장

보행자 보호 안전기준 마련 및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

◆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차 대 보행자 사망자 비율*을 개선할 필요

*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%로 일본(30.9%), 미국(11.1%), 유럽 평균(17.2%) 보다 크게 높은 실정

- 매년 시행하는 신차안전도평가에 올해부터는 보행자보호 안전성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
- '08년 말까지 보행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

◆ 고령 사회('19년), 초고령 사회('26년)에 도달에 대비하여

- 고령자 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'12년까지 완료하고 관계 부처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)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확대 보급책도 마련

⇒ 향후 5년간('07.8~'12.7) 약 250억 원의 연구개발비 투자

1]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

추진배경

-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차 대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%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

- '05년도 차 대 보행자 사망자는 2,457명으로 전체교통사고 사망자(6,376명)의 약 39% (경찰청 통계)

구분	계	차대보행자	차대차	차량단독	기타
사망자 (비율)	6,376명 (100%)	2,457명 (38.6%)	2,659명 (41.7%)	1,254명 (19.7%)	6명 (-)

* '04년도 OECD 평균(17.2%), 일본(30.9%), 미국(11.1%), 유럽(17.2%)

- 높은 보행자 사망자율은 막대한 물적 피해와 후진국형 사고로 OECD 회원국의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

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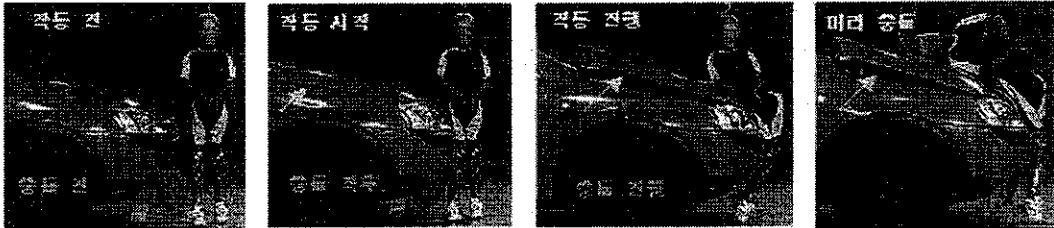
- 올해부터는 보행자보호 안전성을 자동차 안전도평가에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발표
- 『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』에 보행자 보호항목을 추가하여 관련 기준 적합을 의무화, 부적합시 리콜조치 계획
 - 자동차가 시속 40km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, 어린이와 성인의 머리와 보행자 다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
- *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75%가 시속 40km 이하에서 발생

기대 효과

- 제작사차원의 보행자 사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체구조 및 재질의 개선과 함께 관련 첨단기술* 개발을 유도하여 보행자 보호 수준 향상

- * 자동차가 보행자 충돌상황을 감지하여 보행자 머리가 후드에 충돌하기 이전에 후드를 상승시키는 장치인 Active Hood Lift System과 후드 위에 매트를 펼치는 Air Mat System 등.

【 Active Hood Lift System 】



향후 계획

- 차 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보호를 위한 자동차의 안전 성능이 대폭 향상 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('08년 말)
 - * 유럽, 일본은 '95년부터 기준 도입, 미국(미정), 금년말 UN/ECE/WP29 국제기술기준(GTR) 제정 예상
 - 이를 위해 금년 10월경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행자보호 안전기준 초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

② 고령자의 운전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자동차 개발

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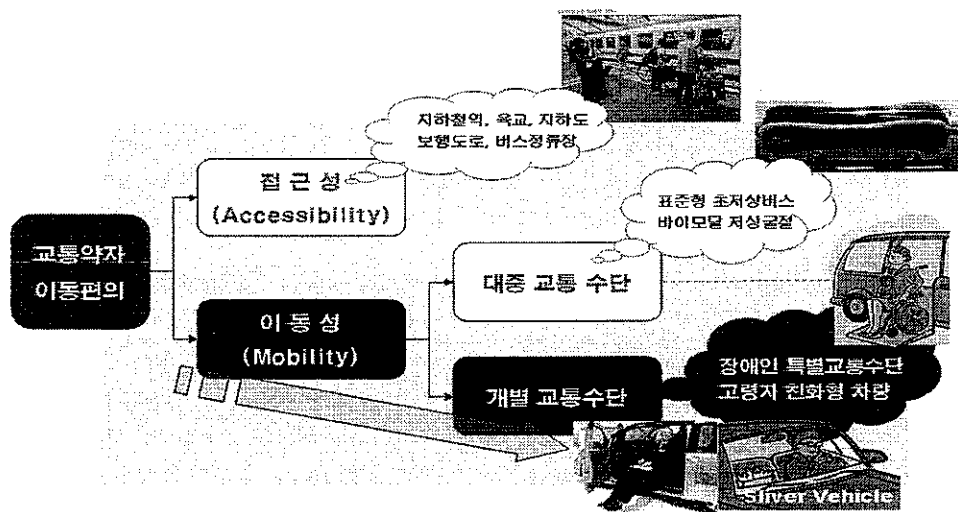
- 고령자의 60%가 외출·이동시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며 33%가 원하는 만큼 외출하지 못하는 실정
 - 고령자의 45%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외출을 필요('04년 교통연구원 연구결과)
 - 경찰청 교통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61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망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
 - '94년 사망자 17.3%(1,748명), '04년 사망자 33.3%(2,183명)
 - '05년 고령자 운전자사고(6,111건) '04년(5,184건) 대비 17.9% (927건)로 증가
 -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친화형 산업시장 규모는 '10년 31조원, '20년 116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(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)
 - 미래 고령층은 높은 구매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체에너지와 더불어 고령자 친화형 설계가 핵심 주제
- ⇒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를 개발하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성, 편리성 확보는 물론,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 향상이 필요

관련 외국사례

- 미국은 "Safe Mobility for a Maturing Society : Challenges and Opportunities"를 발표('03. 11)
 -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제공을 위한 목표 및 전략을 제시
- 일본은 '93. 5월 "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"에서 고령자를 고려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내용을 강화하여 '94. 4월부터 적용

추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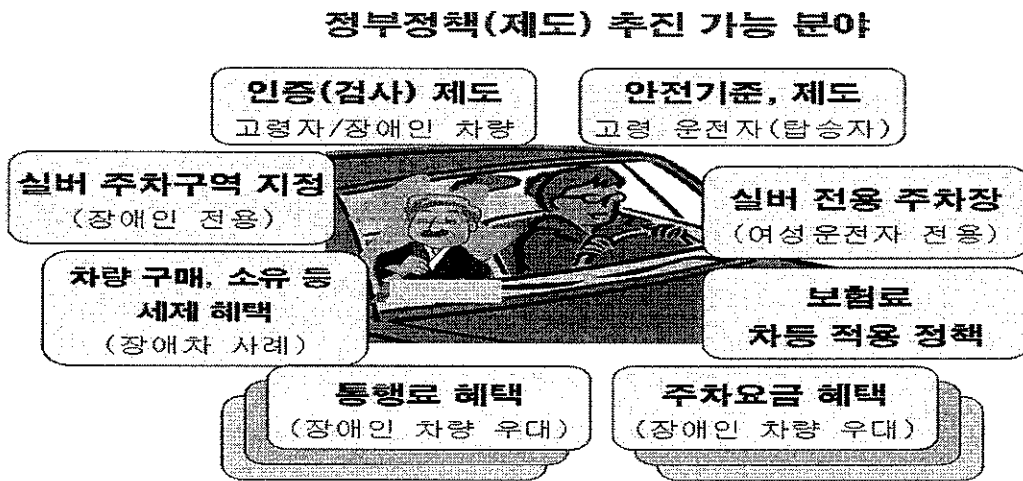
- 일반 자동차와 차별화된 고령자 친화형자동차(Silver Vehicle) 기술을 개발하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성, 편리성,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 확보 추진
 - 고령 운전자, 탑승자보호 및 운전지원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,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의 설계, 안전기준 등을 마련



○ 고령자 친화형 구매시 다양한 정부정책(제도) 도입 및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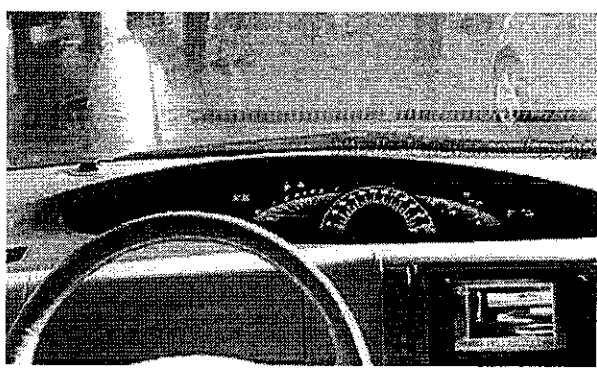
- 차량 구매시 세제혜택, 전용 주차장 제공, 통행료(주차료) 감면, 보험료 차등 적용 등 추진

* 장애인 차량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한 개발(건교부) 및 보급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)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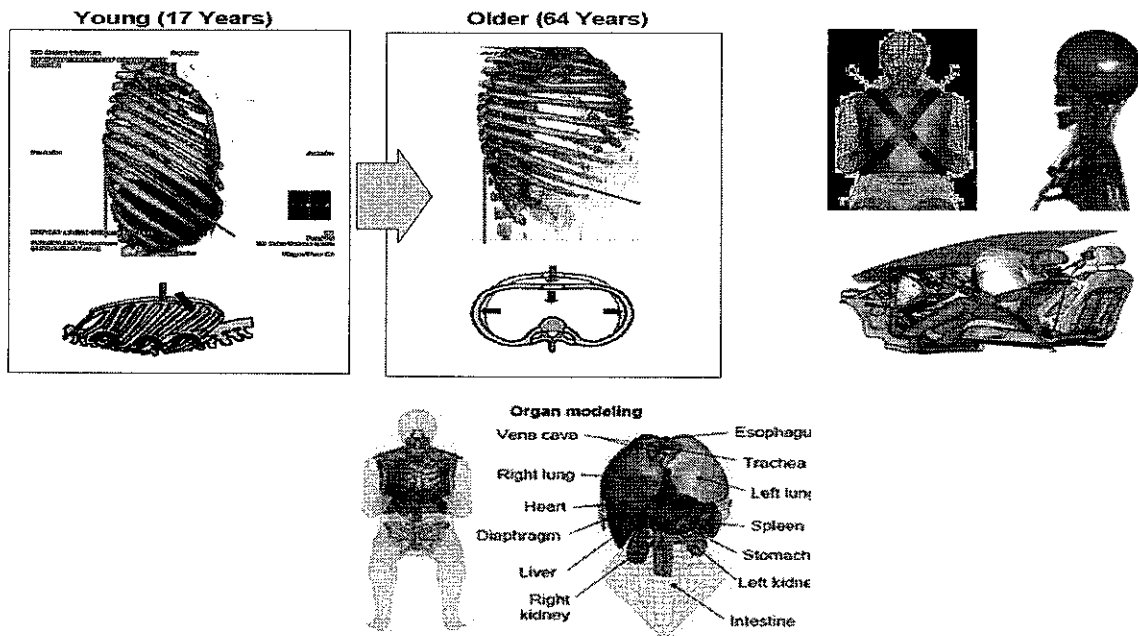


연구개발 주요 내용

○ 고령운전자의 운전 편의성 향상을 위한 계기판넬 조작성 향상, 승하차 편의장치 등 운전 및 탑승편의장치 개발



- 사고시 고령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감소를 위한 인체 상해기준, 안전벨트 등 충돌안전장치 개발



- 야간 및 악천후 등에서 고령운전자 등의 전방시야(시계)를 향상,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편의성 지원을 위한 자동차 전조등(헤드램프 등)의 시스템 기술을 개발



- 승하차 편의장치, 자동차 보조장치 등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평가, 기술규정,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 연구개발

기대효과

- 조만간 도래가 예상되는 고령 사회('19년), 초고령 사회('26년)에 걸맞는 자동차 정책의 시행으로 복지사회 구현,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효과기대

향후 계획

- 향후 5년간('07.8~'12.7) 250억원의 연구비 투자(정부 141억원, 민간 108억원)하여 고품자 친화적 자동차를 '12년 경 개발하고
- '12년부터 관계부처(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등)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

【 참고 : 고품자 친화형자동차(Silver Vehicle) 기술(예시) 】

